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58 발의연월일: 2024. 11. 7.

발 의 자:윤건영·박홍배·송기헌

김영배 · 노종면 · 채현일

이기헌 · 허성무 · 박선원

양부남 • 한병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내진 성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물을 신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었으나, 내진 설계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던 건축물이나 적용 대상이 아닌 건축물들은 여 전히 지진에 취약하고,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이 필수적임에 도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자발적인 보강이 어려운 실정임.

현행법은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고 내진 성능을 갖춘 건축물의 확산을 목적으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일정 비율로 감면하고, 신축 건축물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을 경우 취득세를 일정 비율 감면함.

그런데 내진 성능 확보율은 여전히 매우 저조하여 지진 피해 예방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 성능을확인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에 일몰되어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에 일몰될예정임.

이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감면 대상을 신축뿐만 아니라 대수선 등을 통해 인증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또한, 내진 설계 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건축 당시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여 내진 성능 확인을 받는 경우, 취득세와 5년간의 재산세를 면제하는 세제 혜택을 통해 자발적인 내진 보강을 유도하고 지진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47조의4).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4의 제목 중 "내진성능 확보"를 "내진성능 확보 및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신축하는 건축물로서"를 "건축 및 대수선을 통하여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180일 이내에"로, "건축물(취득일부터 180일이내에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을 "경우에는"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건축 및 대수선을 통하여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건축 당시 내진설계기준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 1.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2.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감

면기간 중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건축물 중 감면받은 날부터 3 년 이내에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제5항에 따라 지진 안전 시설물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내진성능 확보 및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내 진성능 확인을 받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 ② 제47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 제3조(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법 시행 전에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는 경우(취득일부터 180일 이내에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47조의4제3항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의4(<u>내진성능 확보</u> 건축물	제47조의4(<u>내진성능 확보 및 지</u>
에 대한 감면) ① · ② (생	<u>진안전 시설물 인증</u> 건축물에
략)	대한 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③ 건축 및 대수선을 통하여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 <u>1</u>
	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
	나 건축 당시 내진설계기준 적
	용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
	세를 면제한다.
	2.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
	한다. 다만, 감면기간 중 건축
	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③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 3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취득일부터 180일 이내에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성우	에는	: 감	면경	하지	아	니현	나디	<u></u>
<u>4</u>	<u>건</u>	축	밎	대	수선	을	통	하	혀
<u>건</u>	축물	을	취	득히	나는	7	성우	로/	서
<u>취</u>	득일	부터	터 <u>1</u>	.80	일 (기나	에		- —
						- <u>경</u>	우어	는	<u>-</u>
									- —
									- —
									- —
									-
									- —
				<u>-</u>	2027	7년	12-	월	3
<u>1일</u>	<u> </u>				<u> </u>	<u> </u>	삭	제)	>

⑤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건축물 중 감면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제16조의3제5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